



## 학교방문자 출입 관리 원칙 안내

본교에서는 초·중등 교육법 제 30조의 8(학생의 안전대책 등) 및 교육부 「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 학교 방문자 출입 통제 및 학교 개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. 가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읽어 보시고, 소중한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1. 학교 중앙현관 개방 시간 : 등교 시간 : ~ 8:50  
하교 시간 : 12:00 ~ 14:30
2. 학교 중앙현관 출입문 폐쇄 :  
등·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본관 중앙 현관 폐쇄를 원칙으로 함
3. 학교 방문 절차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학교 방문자 출입절차</b></p>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앙 현관의 벨을 눌러서 현관문 개방을 요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교에 방문하는 모든 학부모는 행정실 학교 출입자 명부에 방문자의 번호, 시간 성명, 소속, 학부모 전화번호, 방문 목적 등을 기재함</li> <li>- 본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제출하고, 방문증을 교부받아 교내에서 항상 패용함</li> <li>- 제출한 신분증은 방문증을 반납시 회수 가능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등·하교 시간 학부모의 교내 무단 출입금지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부모가 학교방문자 출입관리 절차(출입자 명부 기록 후 방문증 교부)없이 무단으로 교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</li> <li>- 학부모가 책가방과 악기, 방과후 학교 준비물 등을 이유로 복도와 교실까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함</li> </ul>

#### 4. 학교장이 출입거부·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

-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
- 교직원이 출입 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
-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-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

**\* 학부모 및 외부인은 출입증 없이 학교 본관 건물 출입이 금지됩니다.  
학교 출입시 사전 방문 요청 및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출입하여 주시기  
바랍니다.**

(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 19조 따른 퇴교 요청 불응 시 학교장은  
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.)

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,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문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

2022. 9. 23

전 주 문 학 초 등 학 교 장 김 선 옥